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915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:임종국, 김성준, 김원태

자: 임종국, 김성준, 김원태, 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 서상열, 송도호, 아이수루 , 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효원, 전병주, 한 신, 황유정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○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 대상을 외국의 지방정부 외에 관련 국제기구,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규정의 "외국 지방정부"를 "외국 지방정부 등"으로 수정하고, 그 범위를 외국의 지방정부와 그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, 국제개발 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로 확대함(안 제2조).
- 나.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용도를 "외국 지방정부 등"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함(안 제6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국제개발협력기본법

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외국 지방정부'란"을 ""외국 지방정부 등"이란"으로, "외국의 지방정부를"을 "다음 각 호의 기관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외국의 지방정부
- 2.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
- 3.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

제6조제1호 중 "지방정부와"를 "지방정부 등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<u>'외국 지</u>	제2조(정의) <u>"외국 지</u>
<u>방정부'란</u>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	<u> 방정부 등"이란</u>
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	
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	
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인정	
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.	<u>다음 각 호의 기관을</u> -
<u><신 설></u>	1. 외국의 지방정부
<u><신 설></u>	2.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
	련 공공기관
<u><신 설></u>	3.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
	관련 국제기구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	제6조(기금의 용도)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<u>외국 지방정부와</u> 의 교류협력	1. <u>외국 지방정부 등과</u>
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	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가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 대상을 외국의 지방정부 외에 관련 국제기구,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, 제2조(정의) 및 제6조(기금의 용도)의 내용을 수정(외국 지방정부 → 외국 지방정부 등)하고,
- 제2조제1호 및 제2호, 제3호를 신설하여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를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과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수계 대상에서 제2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진형

2 02-2180-7954

e-mail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